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173 |
|----------|-----|

발의연월일 : 2008. 10. 30.

발 의 자 : 영등포구의회 17명 전의원

1. 주 문

최근 입법예고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등포구 재정의 열악함과 타구와의 재정 불균형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보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함.

2. 제안이유

- 서울시의 대표적인 구도심 중 하나인 영등포구는 전체면적의 22.3%가 준공업지역으로서 노후된 제반시설 개선을 위한 재정 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고
- 여의도를 제외한 전역은 낙후지역으로 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정비 등 지출수요가 타구여건과 다를 바 없어 현재의 재정여건으로는 감당이 어려운 실정임.
- 2005년에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와 2007년 신설된 재산세 공동과세제도 시행, 그리고 개정 예정인 지방세법에 의한 세목 교환으로 우리구는 매년 재정 감소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금번 서울시 조정교부금 관련 개정안은 타구 대비 영등포구의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재정여건의 역전이 예상되므로 서울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시 조정교부금 축소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비용산정기준을 조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선 촉구 건의안

지방자치법 제17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7조에 의거 서울시와 자치구간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에서 자치구의 재정여건에 따른 부족재원을 보존해 주기 위해 서울시에서는 조정교부금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교부시기 등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정하여 자치구에 조정교부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가 정책은 물론 자치구별 행정 수요가 다양하게 변화하고 성장을 거듭해 왔으나 서울시는 이러한 변화와 현실에 적극 대응하지 못한 채 기존의 제도를 그대로 운영해 오므로서 타 자치구도 그러하겠지만 우리구에서도 재정전반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더구나, 최근 개정예정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영등포구는 재원조정 교부대상에서 제외됨으로서 재정압박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동안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 등을 중단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금번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과 같이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조정교부금 재원을 현행 50%에서 60%(2003년 이전 기준)로 상향조정이 필요합니다.

둘째, 자치구의 재정부담이 되는 조례안을 개정시는 사전 준비가 가능하도록 부칙에 일정한 유보기간(2~3년)을 두고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2009년부터 본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본 개정안을 강행한다면 개정안 부칙에 제시한 「2009년도에 한해 2008년도 대비 보통교부금 교부액 규모가 평균액 이상 감소하는 자치구는 감소액의 일정비율을 보통교부금으로 가산보전 교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서 2009년도에 한해 2008년도 대비란 내용을 2012년도까지 매년 전년도 대비로 변경하여 교부금 축소구에 대한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넷째, 기준재정수입액 산정식 중 순세계잉여금은 세원발굴 및 세입징수 노력과 예산절감 등의 노력에 의해 발생하는 결과로 이를 기준재정 수입액에 반영한다는 것은 재정분석 지표평가를 통한 재정인센티브(가산교부)와 모순되므로 순세계잉여금을 기준재정 수입액에서 제외시켜야 할 것이며,

또한 수입액 산정시 수입에서 제외수입 중 재산매각 수입만 제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월금(사고, 명시)도 수입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시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한 보정계수를 기본 교부금 산정시 반영하여야 할 것입니다.

영등포구는 지리적으로 교통 요충지로서 경인로, 제물포로 등을 통해 유입되는 유동인구와 지하철 4개 노선과 환승역을 통해 유입되는 유동인구가 많아 이에 따른 도시제반여건의 개선이 필요하고 도시 관리 비용이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유동인구 관련 항목이 환경 분야에만 적용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적용분야를 확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가리봉동, 구로동 등 공단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최근 영등포구 대림동, 도림동, 신길동 등 주변지역으로 확산됨에 따라 청소·환경 관리, 교통, 치안 등 지역문제를 야기하고 국민기초수급책정지원 등 재정지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니 외국인 4만명을 비용산정의 기준이 되는 우리구 인구수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동안 영등포구는 여의도와 타 지역간 불균형이 가속화 되고 있어 여의도를 제외한 지역은 여타 자치구와 실정이 다를 바 없이 낙후된 지역으로 지역개발 사업에 투입 비용이 과다한 실정임에도 이러한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비합리적이므로 본 개정안을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은 41만 영등포구민의 염원을 담아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촉구·건의하는 바입니다.

2008. 10. 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일동